

水害被害 支援을 위한 地方稅 減免計劃(案)

의안번호

제안년월일 : 2002. 10. .

제안자 : 거창군수(재무과)

□ 제안사유

제15호 태풍 『루사』로 뜻하지 않은 재해를 입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재민들의 자력복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재해 시설물등에 대하여 지방세법령의 범위내에서 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코자 함.

□ 감면대상 및 적용시기

세 목 별	감 면 대 상	적용 연도	비고
종합토지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▫ 호우 및 태풍으로 인하여 유실된 농경지 ▫ 반과이상의 피해를 입은 건축물 부속토지 	2002	
농업소득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▫ 농작물에 대한 피해율이 30% 이상인 자 	2002	
재 산 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▫ 피해를 입은 건축주가 대체취득하기 위하여 신축, 증·개축하는 건축물로써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기분의 재산세 	2년이내 대체취득시	
사업소세 (재 산 할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▫ 사업소용 건축물의 사업주로서 피해액이 법인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총소득금액의 30% 이상인 자 	2003	

□ 관련근거

- 지방세법 제9조의2 (天災등으로 인한 減免)
- 지방세법시행령제1조의2 (地方稅를 減免할 수 있는 特殊한 事由 등)